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중소기업청의 「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지침 개정 알림」
(기업금융과-358, '16.4.14.)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기준 개정·시행 알림」
(보증 2016-9045, '16.4.19.)

2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대상기업	<p>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</p> <p>*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불가</p>	<p>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</p>

3. 시행일 : 2016년 6월 1일(수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2.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3. 「협동조합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장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331 (2016.06.02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